

	<h2 style="margin: 0;">대학성과관리센터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	4-0-13	
			제정일자		2020.03.01.	
			개정일자			
		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	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의 성과분석 및 환류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대학성과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 구성 및 운영,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
1. 대학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
2. 대학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
3. 대학 성과지표 데이터의 수집·분석
4. 대학 성과관리 결과의 공유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성과관리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 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기획부처장이 겸직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
③ 센터에는 업무관리를 위하여 본 대학 직원이 겸직하며, 필요한 경우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성과관리) ① 센터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.

② 센터는 상시 성과관리를 추진하며 각 학부(과) 및 부서는 이에 필요한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센터는 대학발전계획, 대학자체평가 등을 분석하여 대학의 성과관리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후 구성원과 공유한다.

제5조(위원회) ① 대학 성과관리 전반의 사항과 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두거나, 자체평가실무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외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

1.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
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7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